



경성대학 215

사회복지/01/발표논문/

교회사회복지법인의 책무성 방향

손병덕 (충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들어가는 말

공공과 민간이 조직화된 활동을 통하여 사회문제의 해소·해결·예방에 기여하는 사회복지의 기본적으로 공공부분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공공부분에서 충족되기 어려운 복지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법인과 산하시설을 통한 복지공급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의 역할이 활성화되기 이전인 조선후기부터 선교사들의 봉사로 사회복지활동이 전개되었고 식민치하와 한국전쟁을 지나면서 더욱 민간의 복지참여가 요청될수록 한국교회는 복지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유의웅, 1991; 이상열, 1992; 손병덕, 2010). 최근 경제적 발달과 시민의식의 향상과 더불어 저출산·고령화·범죄·학대·가정폭력·성폭력·자살·소외계층의 확대 등 증가하는 사회문제로 인하여 더욱 민간사회복지법인에 의한 복지참여가 요구되는 상황에 있다. 현 정부 들어서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증액, 행복기금의 확대와 같은 보편 복지성 정책을 확대하면서 정부재정약화가 예상됨으로¹⁾ 한층 더 민간부분의 활발한 복지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다.

비영리 기관인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문제를 경험하는 소외계층에게 직접 복지자원과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법적기관²⁾을 가지고 있고, 특히 교회사회복지법인과 산하 시설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섬김을 통하여 이루려는 신앙적 가치를 기치로 풍부한 인적·물적·시설 자원을 기초로 민간 사회복지 분야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박종삼, 1992).

교회사회복지법인 간 협력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하여 신앙을 주제로 사회복지활동에 기여

- 1) 복지제도의 성숙과 복지수요증가로 인해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증가는 이전부터 예견되어 왔다. 민간부분의 자원조달확대를 위해 기업기부금에 대한 조세감면과 종교법인·사회복지법인 등의 역할을 통한 지역사회 community 자체 자원조달을 통한 사회복지사업 촉진이 시급한 정책과제로 제시된바 있다(고경환, 2011).
- 2) 사회복지사업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분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활성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분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1항과 2항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①자원봉사활동의 홍보 및 교육, ②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③자원봉사활동 중의 재해에 대비한 시책의 개발, ④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국가는 지역사회 민간단체의 사회복지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한 방편으로 종교단체가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등에 지난해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규정이 올해부터는 영구 면제하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부 공고 제 2012-26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에서 22조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보면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등 사회복지단체가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뿐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에 대한 일몰제를 영구 폐지토록 하는 내용이다.

하고자 설립된 법인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사회복지법인의 법적분류를 살펴 보는 것이 협력에 앞서 논의되어야 할 기독교사회복지법인의 경제성과 공공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법인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나 법인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공법으로 설립된 법인 공법인과 민법과 상법 등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사단법인·재단법인·사회복지법인 등과 같은 사법인이 있다. 공법인과 사법인은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될 수 있고 영리법인과 비영리 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인 사단법인³⁾과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을 그 실체로 하는 법인인 재단법인⁴⁾으로 다시 구분될 수 있다⁵⁾.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고 기타 비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주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는 법규에 따라⁶⁾ 교회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체가 되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7)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⁸⁾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회사회복지 법인은 법에 기초하여 설립된 조직으로서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이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⁹⁾.

2010년 12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1,718개 사회복지법인이 있고 그중 1,441개소가 시설법인, 267개소가 지원법인으로 나타난다(표1 참조). 시설법인에는 1개 시설만 운영하는 712개 법인과 10개소 이상 시설을 운영하는 86개 법인이 있고, 지원법인에는 기본재산의 규모가 5억 미만인 117개 법인과 30억이상인 47개 법인 등 다양한 형태의 시설법인과 지원법인이 존재한다. 100개 이상 시설·지원법인이 소재하는 지역은 서울, 부산, 경기, 충남, 경북, 경남으로

- 3) 사단법인은 비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일정한 사람들이 모여 ①목적, ②명칭, ③사무소의 소재지, ④자산에 관한 규정, ⑤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⑥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⑦준립시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함으로 설립된다.
- 4) 재단법인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①목적, ②명칭, ③사무소의 소재지, ④자산에 관한 규정, ⑤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⑥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⑦준립시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함으로 설립된다.
- 5) 법인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두가지 중 하나로서 설립되어야 하며, 중간적인 형태의 법인은 인정하지 않음.
- 6)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7)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아동복지법 ③노인복지법 ④장애인복지법 ⑤한부모가족지원법 ⑥영유아보육법 ⑦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⑧정신보건법 ⑨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⑩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법률 ⑪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법사업등에관한법률 ⑫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⑬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⑭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⑮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⑯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⑰의료급여법, ⑱기초노령연금법, ⑳긴급복지지원법, ㉑ 다문화가족지원법, ㉒ 장애인연금법, ㉓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2012.6.8시행), 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㉖ 장애아동복지지원법(2012.8.5 시행)』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노숙인 등·보호(2012.8.5 삭제)·직업보호·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함.
- 8)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31조)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사회복지사업법상 제조항을 근거로 성립되어야 함. 사회복지법인의 종류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설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지원법인이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私)법인이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고 볼 수 있다.
- 9)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 2항.

조사된다.

【표1】사회복지법인 현황(‘10.12 기준)

(단위 : 개, 개소)

구분	합계	시설법인					지원법인				
		계	1	2~5	6~9	10 이상	계	5억 미만	5~9억	10~30억	30억 이상
전국	1,718	1,451	712	555	98	86	267	117	45	58	47
서울	297	198	50	77	29	42	99	15	23	29	32
부산	138	122	65	52	4	1	16	4	4	5	3
대구	79	73	35	27	5	6	6	1	1	1	3
인천	43	34	12	21	1	0	9	4	2	3	0
광주	52	47	17	25	3	2	5	1	1	1	2
대전	65	58	25	21	4	8	7	5	2		
울산	38	35	1	5	17	12	3	1	1		1
경기	195	150	78	60	7	5	45	31	6	7	1
강원	89	64	45	14	1	4	25	21		2	2
충북	65	51	22	22	6	1	14	11		2	1
충남	166	160	105	51	4		6	3		3	
전북	101	99	55	37	4	3	2	2			
전남	75	73	34	38	1		2			2	
경북	102	88	41	40	5	2	14	6	4	2	2
경남	169	156	108	44	4		13	12		1	
제주	44	43	19	21	3		1		1		

- 시설법인 : 운영하고 있는 시설 수(복지부 소관시설 기준)
1: 1개소, 2~4: 2개소에서 4개소, 5이상 : 5개소이상
- 지원법인 : 기본재산의 규모(정관기재 재산 기준)
1억미만 : 기본재산이 1억미만 1~3억 : 기본재산이 1억이상 3억미만 3억이상 : 기본재산이 3억이상
출처: 보건복지부(2012).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pp.6

표2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재단·사단법인을 포함하는 종교법인은 전체 705개소이며 그 가운데 기독교는 재단법인 140개, 사단법인 204개 총 344개로 종교법인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교법인과 천주교법인이 각각 207개와 98개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인 기독교 194개로 가장 많고, 불교가 104개, 천주교가 5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고병철, 2008, pp.64).

【표2】종교별 법인 현황('10.12 기준)

(단위 : 개, 개소)

구분 시·도 별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기타종교		소계		계
	재단 ¹⁰⁾	사단 ¹¹⁾	재단	사단	재단	사단	재단	사단	재단	사단	재단	사단	
서울	31	63	77	138	33	12	2	5	9	11	152	229	381
부산	10	11	8	3	7	2	1	-	-	-	26	16	42
대구	2	2	6	1	2	1	1	-	-	-	11	4	15
인천	2	2	3	13	1	-	1	-	-	1	8	16	24
광주	-	2	3	1	3	-	1	-	3	-	13	11	24
대전	3	7	3	3	3	1	1	-	-	-	3	5	8
울산	2	4	-	1	-	-	1	-	-	-	3	5	8
경기	10	13	12	22	10	2	1	-	1	-	34	37	71
강원	2	-	4	1	3	-	1	-	-	-	10	1	11
충북	3	4	2	3	3	-	1	-	1	-	10	7	17
충남	-	1	3	1	1	1	1	1	-	-	5	4	9
전북	1	2	5	14	1	-	1	-	1	1	9	17	26
전남	1	3	4	-	-	-	1	-	-	-	6	3	9
경북	3	10	7	1	3	1	1	-	-	-	14	12	26
경남	-	9	1	1	6	-	1	1	1	2	9	13	22
제주	1	3	2	1	1	-	1	-	-	-	5	4	9
소계	71	136	140	204	78	20	17	7	16	15	322	382	705
계	207		344		98		24		31		705		
사회 복지 법인	104		194		58		16				372		

출처: 행정안전부 법인통계 자료(2011.12), 고병철(2008)자료

이처럼 교회를 기반하는 기독교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증가와 지역사회에서의 광범위한 역

10) 허가권 및 관리 감독권이 그 사업 범위에 관계없이 중앙부처 소관.

11) 가권 및 관리 감독권이 그 사업 범위가 1개 시도에 국한될 때는 해당 지자체, 그 사업 범위가 2개 시도에 걸쳐 있을 시 중앙부처 소관.

할에도 불구하고 2011년 10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소위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고, 2013년 1월 5일부터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아래 사복법) 개정법률에서 ①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회계부정, 횡령, 절취, 뇌물수수, 배임행위 등을 했을 때 시·도지사가 시정요구 없이 해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②사회복지법인 이사회 회의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이사회 회의록을 회의가 열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회복지법인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하며, ③사회복지시설 내에서 같은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될 때 가중처분 하는 기준이 되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성폭력 범죄는 5년)으로 늘리고,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을 행정처분 사유로 추가하였고, ④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에 의해 시설거주자, 이용자에 대한 중대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을 때 해당시설을 폐쇄토록 하였으며, ⑤외부추천이사제와 전문감사제를 실시하도록 한 것은 민간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책임성·공공성을 요구한 결과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지대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련의 법적 조치들이 진행된 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인들이 공공성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신앙을 기반으로 철저히 시행하고, 수행된 서비스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사회복지 현장에서 민간기관간의 연계 필요성이 요청됨에도 연계가 잘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성의 인식과 실현능력이 다소 부족한 교회사회복지 법인을 돕고, 하나님 나라 실현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기독교 사회복지법인과 시설들이 서로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데 미흡한데서 이런 부정적 결과들이 나타나게 하는데 기여하였다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민간사회복지현장에서 교회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교회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 달성을 위하여 (1) 교회사회복지법인 간 협력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으로서 교회 사회복지법인의 정체성과 공공성·전문성 확립을, 그리고 (2) 교회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유기적인 관계형성을 위한 방안으로서 ① 전문성 및 자원 재고 consulting 협력, ②교회법인 간 연대를 통한 사회통합 기여를 제안하고자 한다.

2. 교회사회복지법인 간 협력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1) 교회 사회복지법인의 정체성과 공공성·전문성 확립

교회사회복지법인 간 협력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으로서 교회사회복지의 정체성을 살려 법인과 시설의 기독교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계의 양적·질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독교사회복지계가 성경적 신앙을 토대로 빛과 소금되는 역할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기반으로 그리스도의 뛰어난 사랑을 본받아 모범적 운영을 이뤄내는데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교회사회복지 법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할 때 법인과 산하시설 부조리와 인권·법리침해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신앙을 모토로 인간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문제해소를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재정운영의 투명성확보와 개발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법인과 산하 시설이 기독교정체성에 부합하여 바람직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첫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가 설립 취지에 맞게 구성되고(서상현, 2007), 구성원인 이사들이 법인과 산하시설운영 효과성과 시설의 서비스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Herman & Renz, 2000) 교회사회복지법인 이사로서의 고유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지원법인의 운영방침에 따라 운영된다. 교회 사회복지법인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법인을 구성하는 이사와 이사회를 통하여 법인의 주요 사업방향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감독하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교회사회복지 법인 이사회는 기독교적 설립 목적 아래 설립된 법인 산하 조직의 주요 정책과 운영방향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기관 운영의 능률성과 효과성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 법인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이 양적 증가현상을 보임에 따라 사회복지공급주체들로 하여금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책임성, 운영의 투명성, 효과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 효율적 조직관리 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여 교회사회복지 법인도 기독교정체성을 기반으로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조직운영의 효율성, 질 높은 서비스 실현, 조직성과를 동시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 토양을 법인 이사회가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 사업법 제18조임원구성 요건¹²⁾을 기본적으로 지키되 기독교정체성을 가지고 법인의 설립 목적에 따라 법인운영을 실질적으로 운영·감독할 수 있도록 기독교사회복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이사회 구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둘째, 사회복지법인과 산하시설은 다양한 욕구를 가진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적 삶의 질을 유지·향상시킴으로써 지역사회가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사회복지역량을 사용하여 전문가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국가와 지역사회로부터 실질적 역할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과 산하시설로서 존재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는 지역사회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법인과 산하시설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전문적

- 12) 사회복지 사업법 제18조(임원)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2.1.26>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7조제2항 각 호(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1. 제7조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
 2.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회
 ③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26>
 ④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⑤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12.1.26>
 ⑥ 법인은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⑦ 감사는 이사와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역량과 기술이 책임있는 법인·시설 운영과 서비스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에 교회사회복지법인은 산하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에 따라 적어도 법에 명시된 '시설 이용자의 인권, 시설의 환경, 시설의 운영'¹³⁾, 시설의 안전관리, 시설의 인력관리¹⁴⁾,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에 있어 지역사회에서 인정하는 수준으로 서비스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2) 교회사회복지법인들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① 전문성 및 재원 재고 consulting 협력
 표3에 나타난바와 같이 사회복지법인의 산하시설은 국가와 지자체의 감독과 지도를 받는 위치에 있어 전문적인 운영결과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 개선명령, 비용징수, 보조금반환, 시설의 신고, 폐쇄에 대한조치, 안전점검 대상이 되고 일정운영수준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향후 시설의 위탁에서 배제될 수 있다. 소극적으로는 시설위탁탈락의 위험을 탈피해야하는 책임감이 제기되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담당해야하는 교회의 실존적 당위성을 따라 교회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은 운영에 있어 탁월한 전문성을 드러내고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운영분야를 선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설 이용자의 인권, 시설의 환경, 시설의 운영¹⁵⁾, 시설의 안전관리, 시설의 인력관리,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를 상시 점검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전쟁이후 태동한 기독교 사회복지시설의 대부분은 수익사업기반이 없이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에 의존하여 시설운영비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은 안타까운 사실이다¹⁶⁾. 이런 열악한

13)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3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7>

14) 자질 향상
 사회복지 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補修教育)을 받아야 한다.

15)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3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7>

16) 종교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교계 지원금을 보면 기독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법인의 지원금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조사된다.

<종교계 사회복지시설의 총세입 규모 및 구성>

계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기타종교
---	-----	-----	----	-----	------

상황에서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급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최근 국민의 사회복지 욕구충족을 위한 국가의 재원확대¹⁷⁾ 분위기와 함께 전략적 사회투자모델을 기초한 기업사회공헌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어 재정기반이 열악한 교회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은 사회복지시설현장의 빠른 성장과 전문화·다양화를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표3】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개입수준

사 항	주무관청			비 고
	복지부	광역시·도	시·군·구	
시설의 설치 신고 및 제한			○	시설 설치 신고 및 시설설치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등 신고의 수리 거부 가능
시설의 위탁	○	○	○	
시설의 운영위원 위촉·선임			○	시설장의 추천
시설의 폐지·휴지·재개의 신고시 조치			○	이때 입소자의 전원 또는 보호조치 행함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시설장의 교체	○	○	○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보조금반환 명령	○	○	○	목적사업 외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등
시설의 평가	○	○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결과를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
시설의 대한 안전점검			○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책임
비용의 징수		○	○	비용을 보조한 지자체에서 행함
후원금관리	○	○	○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등에 대한 보고
지도·감독	○	○	○	주무관청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함

출처: 정무성(2004). 한국사회복지시설현장의 위기와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pp.78에서 재인용.

	556,492	100%	157,512	218,505	129,068	24,420	26,987
계 (n)	(851)		318	247	214	36	36
정부지원금	318,687	57.3%	80,230	133,234	75,087	16,843	13,264
종교계지원금	59,009	10.6%	16,955	27,908	97,707	889	3,550
이용자부담금	87,594	15.7%	27,865	20,160	31,382	3,210	4,977
기타	91,232	16.4%	32,461	37,202	12,892	3,480	5,197

▪ 정부지원금: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지원금
 ▪ 종교계지원금: 종단본부·교구·예당·종교계 법인 등의 지원금
 ▪ 기타: 기업·민간모금단체 등의 후원금, 감사익, 전년도 이월금 포함
 출처: 고정환·장영식·박승화·이혜숙·조철환(2005). 사회복지지출 추계를 위한 한국종교계의 사회복지시설지원금 실태조사 2001-200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143.

17) 사회복지분야 국가재원은 사회복지장성 예산에 주로 사용되고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증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재정기반이 열악한 교회사회복지 법인·시설이 전문성 확보, 사회복지시설기술고양, 기관 운영 효율성 재고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해당기관의 사회복지시설개입 변화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갖추어 있도록 앞선 교회사회복지법인들이 취약한 법인들을 컨설팅 협력을 기하는 것이 후발교회사회복지법인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법인의 재정적인 취약성을 극복하지 않고는 산하 사회복지시설들의 존립과 전문성 향상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재원개발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련 프로그램 제안서, 기부금 요청, 마케팅, 재원확보전략을 위한 조직기능관리 컨설팅협력도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②교회법인 간 연대를 통한 사회통합 기여

사회연대는 사회구성원과 계층이 공동의 책임의식을 느끼고 결속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어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한 교회 사회연대의 영적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이 이념·계층·인종·지역·세대·빈부 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사회적 위기상황에서 교회의 대 사회적 역할은 매우 심각하게 요청된다. 특히 사회문제를 해소·해결·예방하는 민간사회복지 주역으로서의 교회법인은 법인 고유의 기독교정체성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할 수 있고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할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 권위에 바탕을 두고 일관성 있게 사회갈등과 분열에 대하여 참된 가치와 규범을 제시하여 사회구성원들에게 이상적인 사회규범을 알게 하고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열을 예방하고 안정되게 하며 같이 그 사회규범에 순응할 수 있도록 선도할 수 있다. 나아가 교회는 사회에서 잘못된 부분, 부패한 부분들을 개선하고 개혁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즉, 기독교 정체성을 가진 교회법인은 교회를 통하여 축적된 경건의 역량과 조직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일선 복지기관들을 협력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복지논쟁에 기독교 가치관에 기반 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권리와 책임을 수반하는 복지여론을 환기시키고, 나아가 교회법인 간 연대를 통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정당한 복지프로그램 사업에 산 확대와 적용을 통한 궁극적 사회통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통합적 연대와 협력을 위하여 첫째, 교회법인 간 연계와 서비스 연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회법인 간 협의체와 실무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시설 현장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성 재고와 서비스의 질 극대화를 위하여 통합, 연계, 네트워크, 협력, 조정이 핵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과 같이 교회 법인 간에도 기독교가치를 공유하고 사회복지현장에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결실이 가능하려면 관련 법인들의 협의체 구성과 실무자간 네트워크가 필수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교회법인간 협의와 실무자 네트워크를 통하여 시설운영과 프로그램 운영에서 운영상 부조리와 인권침해 사례근절의 구체적 방법이 논의되고 기독교 신앙을 기초로 시설운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모색, 재정확보방안, 기독교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복지프로그램

램의 개발, 지자체와의 관계증진을 포함하는 모범적인 교회 사회복지 전문성 증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독교계는 신앙을 기반하는 재정적, 전문적, 봉사적 자원을 상당수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와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지 못하여 관련자원을 선한 일에 연계하여 지역의 사회복지적 현안들을 공동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교회 법인들이 주축이 되어 교회 법인들과 그 산하 자원을 정보화, 데이터화 하여 지역사회와 국가공동체 안에서 사회복지적 문제들을 공동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서비스 등 새로운 사회복지 실천현장이 급속하게 태동하고 있어 기독교사회복지계가 초기 준비와 참여에 미진함을 보이고 있는데 교회법인과 시설의 정보화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회복지영역의 진입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셋째, 교회법인 간 연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소외계층과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과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현행 정책과 제도에서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적절하게 감시하고 문제를 개선하는 일에 연대와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공공의 문제점을 감시하는 공동연대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사회복지법인들도 투명한 예산집행과 기관운영을 통하여 공공으로부터 신뢰를 획득하기위한 공동의 노력도 필요하다(김영종·김신열, 2007). 그런 신뢰를 획득한다면 교회법인을 포함한 사회복지법인들에게 이관된 사업들이, 공공의 제약 없이 교회법인들의 고유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수행과 인력의 투입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져 공공의 민간감독 비용을 줄이고 민간법인들의 업무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지역별 교회법인과 시설의 분포를 분석하여 지역별 교회사회사업 수요에 대한 합리적 예측과 이에 근거한 인력 및 시설 수급계획을 범 기독교 차원에서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사회복지수행체계 기본틀에 입각하여 지역사회의 수요에 기반하여야 할 것이나 지역교회의 욕구도 함께 고려하여 교회법인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을 피하고 선한 목적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 위한 합리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3. 나오는 말

교회는 복음전파와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하였고(행2:42-47),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리스도인에게 이웃은 선의 실천대상이 되며 이웃에게 행하여질 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이웃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칼빈, 원광연 역, 2004:pp.216) 그러나 그러한 사랑의 실천도 하나님의 지속적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비록 사회문제를 해소해

결·예방하기 위하여 공공과 함께 전문적 서비스를 실행하는 교회사회복지법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의지하여야 하는 교회의 원 경제성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귀한 사역을 계속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법인 구성원들은 법인과 산하 시설이 기독교 정체성에 부합하여 법인과 산하시설을 효과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을 갖춘 분들로 조직되어야 하고 법인과 산하시설은 경건의 훈련, 전문실천기술역량을 갖추어 지역사회로부터 이용자의 인권, 시설의 환경, 시설의 운영, 시설의 안전관리, 시설의 인력관리, 지역사회 연계, 그리고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에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할 공적 책임성을 가진다.

교회사회복지법인과 시설들이 그리스도의 덕을 드러내고 전문성에 있어 탁월한 평가를 받기 위하여 법인과 시설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간주될 수 있다. 교회사회복지법인과 시설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는 첫째, 재정기반과 사회복지 전문성이 취약한 법인과 시설들이 전문성재고와 재원확보를 기할 수 있도록 돕는 consulting 협력차원에서 가능하고, 교회법인 간 협의와 실무자 네트워킹을 통하여 시설운영과 프로그램 운영에서 운영상 부조리와 인권침해 사례근절의 구체적 방안이 논의되어 모범적인 기독교사회복지 전문성 증진을 기할 수 있으며, 교회법인과 그 산하 자원을 정보화·데이터화 하여 다양한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태동에 공동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고, 교회법인간 연대를 통하여 복지정책과 집행과정에서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투명한 예산집행과 기관운영을 통하여 얻은 공공신뢰를 바탕으로 교회 법인들의 고유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수행과 인력투입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 같이 교회 법인들도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하여 연대하고 협력한다면 교회의 원 목적을 수행하고 그 열매로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교회법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경험한 하나님 나라와 그 능력을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웃을 향한 전문적 실천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일에 매진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고경환·장영식·박승희·이혜숙·조철환, 『사회복지지출 추계를 위한 한국종교계의 사회복지시설지 원금 실태조사 2001-200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고경환,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94호 (2011-26), 2011.

고병철, 『한국의 종교 현황 조사연구』. 서울:종교문화연구원, 2008

김영중·김신열, 『민간 복지 활성화에 관한 연구』,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2012.

서상현, 『사회복지법인 이사역할과 조직성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 韓國地方自治研究, 第8卷 第3號(통권17호), 103~125.

손병덕, 『교회사회복지』. 서울: 학지사, 2010.

유의웅, 『현대교회와 사회봉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출판국, 1991.

이상열,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 서울 : 한울, 1992.

정무성, 『한국사회복지실천현장의 위기와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2004.

칼빈, 『기독교강요』. 원광연 옮김.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행정안전부, 『법인통계자료』. 2011.12.

행정안전부 공고 제 2012-26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2012.

Hernan, R. D. & Renz, D. O. (2000). Board Practice of Especially Effective and Less Effective Local Nonprofit Organization.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30(2): 146-160.

사회복지/02/발표논문 요약본/

사회복지 이슈와 기독교세계관

강상우 (고구려대 교수)

초록

본고는 오늘날의 사회복지 이슈에 대해서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오늘날 이슈가 되었거나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에 대한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연구 문제 1: 복지 논쟁: 복지에 대한 논쟁은 색깔논쟁인가?
- 연구 문제 2: 복지 이슈: 구체적 복지 이슈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답하고 있는가?

- 2-1: 복지 범위: 복지의 범위는 보편복지인가 아니면 선별복지인가?
- 2-2: 복지 목적: 복지의 목적은 사회적 책임인가 아니면 진도인가?

- 2-3: 문제 원인: 사회문제의 원인은 개인에게 있느냐 아니면 사회적 구조에게 있느냐?

위의 사회복지 이슈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복지에 대한 논쟁은 색깔논쟁인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논쟁은 나쁜 색깔 논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현실적으로 오늘 이 사회는 많은 위험에 과다 노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담론은 진보적 좌파나 보수적 우파나 색깔 논쟁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 대한 담론이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복지 담론은 복지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되어야 한다.

선별복지나 보편복지나 복지의 범위에 대해 논쟁에 대해서는 오늘날의 사회·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복지는 선별복지에서 보편복지로 가야만 하겠지만 이 경우 현실적으로 복지제정의 확충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사회적 책임인가 진도인가에 대한 사회복지실천의 목적에 대한 논쟁도 ‘극단적 진도의 수단’으로서의 사회복지실천은 지양(止揚)되어야 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한 삶을 통한 사회복지실천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문제의 원인이 개인이나 사회적 구조나에 대한 논쟁도 오늘날 사회 문제는 과거와 달리 세계화와 경제의 불평등 등의 복합요인에 의한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이것이나 저것이나’(either/or)의 이분법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개개의 사회문제의 원인에 대한 집중 분석과 더불어 사회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구체적 실천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I 들어가는 말

“기세기의 한덕에 예수가 다시 온다면 그는 복지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과거에 그가 남긴 말과 삶의 족적은 복지의 미려에 어떤 교정과 정점을 줄 수 있을까.”
(저정식 2012: 87-88)

“복음의 모든 면을 살펴보면 당신 자신의 시대가 직면한 문제만 제외한다면
당신은 전혀 복음을 살피지 않은 것이다.”
(Martin Luther King, jr의 말)

본고는 위의 제사(題詞)들에 대해 본 연구자 나름대로 응답하려고 한다.¹⁸⁾ 기독교는 다음과 같은 것

18) “기독교가 여전히 살아 있는 신앙인 이유 중 하나는 기독교가 피조물처럼 성장하고 변화함으로 써 신앙 여정에 있는 이들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력과 의미